

[신규대비표- 별권1] 『2026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개정(안)

현재 매뉴얼	26년도 개정(안)	개정 사유																		
<p>[별권1]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p>	<p>[별권1] 26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p>	<p>- 제목 변경</p>																		
<p>p.2</p> <p>본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별권 1로 수록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을 중심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p>	<p>p.2</p> <p>본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별권 1로 수록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을 중심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p>	<p>고시 번호 변경</p>																		
<p>p.6</p> <p>●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 및 관리 주요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주요 내용</th> <th style="width: 30%;">수행 주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의 학생인건비를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으로 이체 </td> <td style="text-align: center;">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감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시스템 변경 시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시 신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발생 이지는 학생인건비로 사용 </td> <td style="text-align: center;">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의 학생인건비를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으로 이체 	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시스템 변경 시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시 신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발생 이지는 학생인건비로 사용 	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	<p>p.6</p> <p>●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 및 관리 주요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주요 내용</th> <th style="width: 30%;">수행 주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한 날 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으로 이체 </td> <td style="text-align: center;">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감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시스템 변경 시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시 신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발생 이지는 학생인건비로 사용 </td> <td style="text-align: center;">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한 날 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으로 이체 	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시스템 변경 시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시 신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발생 이지는 학생인건비로 사용 	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	<p>설명 보강, 고시 제91조의2 개정 내용 반영</p>
구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의 학생인건비를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으로 이체 	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시스템 변경 시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시 신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발생 이지는 학생인건비로 사용 	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																		
구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한 날 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으로 이체 	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시스템 변경 시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시 신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발생 이지는 학생인건비로 사용 	통합관리 기관 (연구관리 부서)																		

구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구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관리, 미지급 등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 방지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연구참여확약서, 계좌 거래 내역서 등 증명자료 5년간 보존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반납)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관리, 미지급 등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 방지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연구참여확약서, 계좌 거래 내역서 등 증명자료 5년간 보존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계정대체(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반납) 																															
<p>p.7</p> <p>● 제도 주요 변경 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전</th> <th>혁신법</th> </tr> </thead> <tbody> <tr> <td>연구참여 확약 체결</td> <td>〈신 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기관계정)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가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20% 이상을 지급받도록 관리 (※ '24년도 변경사항) </td> </tr> <tr> <td>지정취소 요건</td> <td>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td> <td>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의무화 (※ '24년도 변경사항)</td> </tr> <tr> <td>기관계정 수입 처리</td> <td>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td> <td>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td> </tr> <tr> <td></td> <td>〈신 설〉</td> <td>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td> </tr> </tbody> </table>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참여 확약 체결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기관계정)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가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20% 이상을 지급받도록 관리 (※ '24년도 변경사항)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의무화 (※ '24년도 변경사항)	기관계정 수입 처리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p>p.7</p> <p>● 제도 주요 변경 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전</th> <th>혁신법</th> </tr> </thead> <tbody> <tr> <td>연구참여 확약 체결</td> <td>〈신 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기관계정)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게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20% 이상을 지급 노력 (※ '25년도 변경사항) </td> </tr> <tr> <td>지정취소 요건</td> <td>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td> <td>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의무 규정은 폐지 (※ '25년도 변경사항)</td> </tr> <tr> <td>기관계정 수입 처리</td> <td>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td> <td>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td> </tr> <tr> <td></td> <td>〈신 설〉</td> <td>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td> </tr> </tbody> </table>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참여 확약 체결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기관계정)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게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20% 이상을 지급 노력 (※ '25년도 변경사항)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의무 규정은 폐지 (※ '25년도 변경사항)	기관계정 수입 처리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참여 확약 체결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기관계정)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가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20% 이상을 지급받도록 관리 (※ '24년도 변경사항)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의무화 (※ '24년도 변경사항)																																	
기관계정 수입 처리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참여 확약 체결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기관계정)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게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20% 이상을 지급 노력 (※ '25년도 변경사항)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의무 규정은 폐지 (※ '25년도 변경사항)																																	
기관계정 수입 처리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p>설명 보강, 고시 제91조의2 개정 내용, 제94조제3항 폐지 내용 반영</p>																																

구분	종전	혁신법	구분	종전	혁신법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p.11			p.12			NTIS 홈페이지 개편 사항 반영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메뉴의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및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정보를 기관 담당자가 직접 관리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메뉴의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및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정보를 기관 담당자가 직접 관리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내 'R&D플러스-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메뉴 도움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보완·개정 안내」 참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내 'R&D 과제 준비 - 국가 R&D 법령·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메뉴 도움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보완·개정 안내」 참고			
p.23			p.23			설명 보강
2.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2.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학생연구자 등록·변경 시 학적·인사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학생연구자 등록·변경 시 학적·인사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 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및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신설>

(이하 생략)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 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및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 연구참여확약 시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기관장이 확약 하므로 과제 준비에 대한 별도 증빙 불필요하며, 체결된 연구참여확약서를 과제 준비 연구수행의 증빙으로 볼 수 있음

(이하 생략)

p.24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주요 내용
 -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 작성

구분	확약 기간 (예시)	유의사항
학기(6개월)	당해연도 3월~8월, 9월~차년도 2월	학기 또는 학년 중에 학생연구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종료 기간 준수 (예: 5월 신규 등록 시 5월~8월로 작성)
학년(12개월)	당해연도 3월~차년도 2월	

p.24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 주요 내용
 - 연구참여확약서는 고시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 작성

구분	확약 기간 (예시)	유의사항
학기(6개월)	당해연도 3월~8월, 9월~차년도 2월	학기 또는 학년 중에 학생연구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과월분 등록하지 않고 학기 또는 학년 말을 종료 시점으로 하여 시작 및 종료 시점 준수 (예: 5월 신규 등록 시 5월~8월로 작성)
학년(12개월)	당해연도 3월~차년도 2월	

설명 보강, 고시 제1호의2 신설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기관 계정 지급액과 책임자계정 지급액을 각각 명시하여 작성 (중략) - 외국인 등 한국어 사용이 힘든 학생연구자와의 연구참여확약 시 영문 확약서 사용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위통합관리시 책임자계정용 연구참여확약서(고시 별지 제1호)와 기관계정용 연구참여확약서(고시 별지 제1호의2)를 별도 사용 (중략) - 외국인 등 한국어 사용이 힘든 학생연구자와의 연구참여확약 시 영문 확약서 사용 권장 (매뉴얼 본권 제3장 제4절 참고 가능) 	
<p>p.26</p> <p>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p> <p>①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또는 학년 초에 체결한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여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계정책임자별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계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계정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추후 각 계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대체처리 불가 • 학생연구자 1인의 인건비 지급 계좌는 1개로 등록 관리(계정별 다른 계좌 등록 불가) <p>(중략)</p>	<p>p.25</p> <p>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p> <p>①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또는 학년 초에 체결한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여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계정책임자별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계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계정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추후 각 계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대체처리 불가 • 학생연구자 1인의 인건비 지급 계좌는 1개로 등록 관리(계정별 다른 계좌 등록 불가) <p>(중략)</p>	<p>설명 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신설> <p>- 학생인건비 지급 시 학적·인사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학생 인건비 지급대상자(재학생, 수료생(연구등록), 휴학생(근로 계약))에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고시 제39조제10항 및 제40조제7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대학·과기원·출연연)은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즉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p>- 학생인건비 지급 시 학적·인사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학생 인건비 지급대상자(재학생, 수료생(연구등록), 휴학생(근로 계약))에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p>	
<p>p.27</p> <p>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p> <p>② 균등지급</p> <p>- 균등지급 대상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 중 선정하며,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선정(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생도 균등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균등지급 가능하며 학사과정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p>	<p>p.28</p> <p>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p> <p>② 균등지급</p> <p>- 균등지급 대상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 중 선정하며,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선정(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생도 균등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균등지급 가능하며 학사과정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p>	<p>설명 보강</p>

<p>※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균등 지급 대상자를 설정하되,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 연구자,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직장인 학생연구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는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p> <p>- <신설></p> <p>-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 선지급 가능</p>	<p>※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균등 지급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직장인 학생연구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예외로 규정(해당 사유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등 대외 규정·지침에 명시)한 학생연구자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등 대외 규정·지침에 명시하고 균등지급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p> <p>- 기관장은 학생연구자에게 복수의 기관계정(전체·세부계정 등)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하며 이때 연구참여확약서는 계정별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함</p> <p>-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 선지급 가능</p>	
<p>p.31</p> <p>5. 계정별 잔액 처리</p>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2.31. 기준으로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계산 -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처리하여 사용. 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기관계정으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고로 반납 필요(기관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고 반납) 	<p>p.30</p> <p>5. 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처리</p>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2.31. 기준으로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계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시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정 잔액을 사용하기에 전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이란 연도 말 시점 잔액을 의미할 뿐이므로, 잔액을 별도 이월 처리하지 않고 당해 연도 수입액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 	<p>고시 제91조의2 개정사항 반영, 설명 보강</p>

- <신설>

- * 연도 말 책임자계정 잔액의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 산출식 :
(책임자계정 잔액 - 당해 연도에 해당 계정에서 지급 또는 기관 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 0.2
- ※ (예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책임자계정 잔액은 5천만 원, 2025년 지급 및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은 4천만 원인 경우 기관계정 이체 또는 국고 반납 비용은 (5천만 원-4천만 원)*0.2 = 200만 원
- * **연구년 등으로 인해** 평년 대비 학생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 기관장의 결정으로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지급분을 기준으로 상기 산출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신설>

- 기관장은 과기정통부장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책임자계정의 연도 말 잔액 일부*를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고, 기관계정으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로 반납 필요(기관계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 반납). 기관장은 이 과정의 공식 의사결정 근거와 결과를 내부 지침 또는 결재문서 등으로 관리 필요

- * 연도 말 책임자계정 잔액의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 산출식 :
(책임자계정 잔액 - 당해 연도에 해당 계정에서 지급 또는 기관 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 0.2
- ※ (예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책임자계정 잔액은 5천만 원, 2025년 지급 및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은 4천만 원인 경우 기관계정 이체 또는 국고 반납 비용은 (5천만 원-4천만 원)*0.2 = 200만 원
- *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 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 하여 평년 대비 학생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 기관장의 결정으로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지급분을 기준으로 상기 산출식을 적용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장관은 잔액 반납·계정대체 금액 산정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며, 이와 관련한 과기정통부 측 별도 안내 확인 필요

p.33

7. 학생인건비 이관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 변경	학생인건비통합 관리기관 ⇒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지 않는 기관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학생인건비통합 관리기관 ⇒ 학생인건비통합 관리기관		
연구책임자들 동일 기관 다른 연구자로 변경	종전 연구책임자 ⇒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관 내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에 따른 이관 처리 후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이관 처리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발생	제95조 제4항, 제5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을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경 없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제95조 제4항	기관장이 해당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기관계정 또는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시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수행 불가	제95조 제4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고,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p.33

7. 학생인건비 이관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 변경	학생인건비통합 관리기관 ⇒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지 않는 기관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학생인건비통합 관리기관 ⇒ 학생인건비통합 관리기관		
연구책임자들 동일 기관 다른 연구자로 변경	종전 연구책임자 ⇒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관 내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에 따른 이관 처리 후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이관 처리 후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발생	제95조 제4항, 제5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을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경 없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제95조 제4항	기관장이 해당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기관계정 또는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시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수행 불가	제95조 제4항, 제5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되,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 기관계정 대신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설명 보강

p.42

3. 지정취소 기준

① 기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2% 초과

- (부당회수비율) 점검 실시연도-5년 1월 1일부터 점검 실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용도 외 사용 건으로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 ÷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 (주의사항)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는 통합이지바로 통합 학생인건비정보 연구책임자계정 수를 기준으로 함
- (판단기준)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제재정보 (통합관리기관에 추가 자료 요구 및 확인 요청 가능)

② 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frac{\text{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좌 지급총액}^1}{\text{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좌 수입총액}^2} \times 100 < 50\%$$

-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의 합
-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전전년도 잔액 포함)
- 위 산식의 수입총액과 지급총액은 모두 전용계좌 현금 입출금 기준임(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또는 반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준월이 아닌 실제 지급·반납일자 기준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내역 및 지급비율을 관리하여야 함)

p.44

3. 지정취소 기준

① 기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2% 초과

- (부당회수비율) 점검 실시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용도 외 사용 건으로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 ÷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 (주의사항)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는 통합이지바로 통합 학생인건비정보 연구책임자계정 수를 기준으로 함
- (판단기준) 전문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제재처분 확정통보 정보 (통합관리기관에 자료 요구 및 내용 확인 요청 가능)

② 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frac{\text{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좌 지급총액}^1}{\text{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좌 수입총액}^2} \times 100 < 50\%$$

-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의 합
-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전전년도 잔액 포함)
- 위 산식의 수입총액과 지급총액은 모두 전용계좌 현금 입출금 기준임(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또는 반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준월이 아닌 실제 지급·반납일자 기준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내역 및 지급비율을 관리하여야 함)

설명 보강, 고시 제94조제3항 폐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의 '2회 이상'이라는 의미는 기관 통산 2회 이상을 의미함. 연속 2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기관단위 전환 미신청 또는 전환 점검 결과 요건 미충족 시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의 '2회 이상'이라는 의미는 기관 통산 2회 이상을 의미함. 연속 2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삭제> 	
<p>p.47</p> <p>Q2. 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기관 전체계정과 기관 세부계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시에 한 학생연구자가 기관 전체계정과 기관 세부계정에서, 또는 여러 개의 기관 세부계정에서 동시에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도 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전체계정과 기관 세부계정에서, 또는 여러 개의 기관 세부계정에서 동일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동시에 지급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함 	<p>p.49</p> <p><삭제></p>	<p>삭제, Q3 이후 번호 앞당김</p>
<p>p.47</p> <p>Q3. 3장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통합관리의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는 확약한 금액을 확약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소급지급은 불가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은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 계정의 예상치 못한 잔액 부족이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확약한 때에 지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소급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함 	<p>p.49</p> <p>Q2. 3장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시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이 가능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는 사전 확약하여야 하며, 확약한 금액을 확약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소급지급은 불가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은 학생인건비통합 관리계정의 예상치 못한 잔액 부족이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확약한 때에 지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지연 지급하는 것 외에는 소급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계정책임자의 임의 요청에 따른 소급 지급은 불가하며, 예상치 못 한 협약 혹은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만으로는 소급 확약 또는 소급 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p>설명 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는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제재처분 대상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함 	
<p>p.48</p> <p>Q6. 3장 <학생인건비 수입처리> 연구개발과제계정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정산을 위해 계좌이체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가 분할 입금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학생인건비를 이체 완료하여야 함 	<p>p.50</p> <p>Q5. 3장 <학생인건비 수입처리> 연구개발과제계정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정산을 위해 계좌이체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가 분할 입금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개발비가 분할 입금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 분할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학생인건비를 이체 완료하여야 함 	<p>설명 보장</p>

<p>p.49</p> <p>참고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2025년 3월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0개 기관(대학 62개, 출연(연) 4개, 특정(연) 4개) 	<p>p.51</p> <p>참고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2026년 3월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2개 기관(대학 64개, 출연(연) 4개, 특정(연) 4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65호 기준이며, 2026년 4월 이후 지정 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고 참고 가능 	<p>현행화</p>
<p>p.50</p> <p>참고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p> <p>지급 대상 적용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 직장인 학생연구자 • 그 밖의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p>* 학과(또는 학부 등) 단위로 운영 시, 학과(또는 학부 등)의 장 가능</p> <p>** 해당 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대외 공개 채널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함</p> <p>기관계정 설정 방식</p> <p>학과 또는 학부 등 세부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연구책임자계정이 있는 전임교원의 80% 이상 동의 시 기관계정 설정 가능</p>	<p>p.52</p> <p>참고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p> <p>지급 대상 적용 예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 직장인 학생연구자 • 그 밖의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p>* 학과(또는 학부 등) 단위로 운영 시, 학과(또는 학부 등)의 장 가능</p> <p>** 해당 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대외 공개 채널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함</p> <p>기관계정 설정 방식</p> <p>기관전체계정 또는 기관세부계정만 설정하거나, 기관전체 계정 및 기관세부계정 병행 설정 가능</p> <p>- 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연구책임자계정이 있는 전임교원의 80% 이상 동의 시 기관세부계정 설정 가능</p>	<p>규정 개정 반영, 설명 보강</p>

	<p>- 기관계정 설정 이후에는, 설정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연구책임자 전원 기관계정으로의 수입액 이체·계정 대체 의무</p>		<p>- 기관세부계정 설정 이후에는, 설정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연구책임자 전원 기관계정으로의 수입액 이체·계정 대체 의무</p>																																																																																																																																			
<p>예산확보</p>	<p>연별 또는 학기별 기관계정 지급총액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공식 의사결정 절차 또는 학과·학부 회의를 통해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대체할 금액 결정</p>	<p>예산 확보</p>	<p>연별 또는 학기별 기관계정 예상 지급총액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공식 의사결정 절차 또는 학과·학부 회의를 통해 연구개발과제계정·연구책임자계정에서 대체할 금액 결정</p>																																																																																																																																			
<p>발생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발생이자는 기관계정으로만 적립 원칙 • 기관 내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 통합관리계정으로 바로 수입처리 가능 <p>* 해당 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대외 공개 채널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함</p>	<p>발생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발생이자는 기관계정으로만 적립 원칙 • 기관 내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 통합관리계정으로 바로 수입처리 가능 <p>* 해당 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대외 공개 채널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함</p>																																																																																																																																			
<p>p.62</p>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인건비 이체 기한 내 이체 관리 기능</p> <table border="1" data-bbox="247 922 925 1073"> <thead> <tr> <th>기관 관리 내역번호</th> <th>과목명</th> <th>과목유형</th> <th>입회 연월일</th> <th>입회 연월일</th> <th>연구개발비 입회일시</th> <th>이체이월 연월일</th> <th>계정명</th> <th>이체 유형</th> <th>이체 금액</th> <th>이체이월 연월일</th> <th>이체이월 연월일</th> <th>이체이월 연월일</th> </tr> </thead> <tbody> <tr> <td>2025-123-90</td> <td>OO 과목</td> <td>통합Ezbero</td> <td>YYYY-MM-DD</td> <td>YYYY-MM-DD</td> <td>2025-05-01</td> <td>2025-03-30</td> <td>기관관리계정</td> <td>Y</td> <td>30,000,000 원</td> <td>30,000,000 원</td> <td></td> <td>0 원</td> </tr> <tr> <td>2025-456-91</td> <td>OO 과목</td> <td>통합Ezbero</td> <td>YYYY-MM-DD</td> <td>YYYY-MM-DD</td> <td>2025-01-01</td> <td>2025-05-01</td> <td>기관내부계정</td> <td>N</td> <td>20,000,000 원</td> <td>20,000,000 원</td> <td></td> <td>0 원</td> </tr> <tr> <td>2025-789-92</td> <td>OO 과목</td> <td>통합RCHS</td> <td>YYYY-MM-DD</td> <td>YYYY-MM-DD</td> <td>2025-02-15</td> <td>2025-02-30</td> <td>A학부과목</td> <td>Y</td> <td>15,000,000 원</td> <td>10,000,000 원</td> <td>5,000,000 원</td> <td>0 원</td> </tr> <tr> <td>2025-147-93</td> <td>OO 과목</td> <td>통합Ezbero</td> <td>YYYY-MM-DD</td> <td>YYYY-MM-DD</td> <td>2025-02-01</td> <td>2025-03-30</td> <td>A학부과목</td> <td>Y</td> <td>15,000,000 원</td> <td>15,000,000 원</td> <td></td> <td>0 원</td> </tr> </tbody> </table>	기관 관리 내역번호	과목명	과목유형	입회 연월일	입회 연월일	연구개발비 입회일시	이체이월 연월일	계정명	이체 유형	이체 금액	이체이월 연월일	이체이월 연월일	이체이월 연월일	2025-123-90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5-01	2025-03-30	기관관리계정	Y	30,000,000 원	30,000,000 원		0 원	2025-456-91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1-01	2025-05-01	기관내부계정	N	20,000,000 원	20,000,000 원		0 원	2025-789-92	OO 과목	통합RCHS	YYYY-MM-DD	YYYY-MM-DD	2025-02-15	2025-02-30	A학부과목	Y	15,000,000 원	10,000,000 원	5,000,000 원	0 원	2025-147-93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2-01	2025-03-30	A학부과목	Y	15,000,000 원	15,000,000 원		0 원	<p>p.64</p>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인건비 이체 기한 내 이체 관리 기능</p> <table border="1" data-bbox="1097 922 1751 1073"> <thead> <tr> <th>기관 관리 내역번호</th> <th>과목명</th> <th>과목유형</th> <th>입회 연월일</th> <th>입회 연월일</th> <th>연구개발비 입회일시</th> <th>이체이월 연월일</th> <th>계정명</th> <th>이체 유형</th> <th>이체 금액</th> <th>이체이월 연월일</th> <th>이체이월 연월일</th> <th>이체이월 연월일</th> </tr> </thead> <tbody> <tr> <td>2025-123-90</td> <td>OO 과목</td> <td>통합Ezbero</td> <td>YYYY-MM-DD</td> <td>YYYY-MM-DD</td> <td>2025-05-01</td> <td>2025-03-30</td> <td>기관관리계정</td> <td>Y</td> <td>30,000,000 원</td> <td>30,000,000 원</td> <td></td> <td>0 원</td> </tr> <tr> <td>2025-456-91</td> <td>OO 과목</td> <td>통합Ezbero</td> <td>YYYY-MM-DD</td> <td>YYYY-MM-DD</td> <td>2025-01-01</td> <td>2025-05-01</td> <td>기관내부계정</td> <td>N</td> <td>20,000,000 원</td> <td>20,000,000 원</td> <td></td> <td>0 원</td> </tr> <tr> <td>2025-789-92</td> <td>OO 과목</td> <td>통합RCHS</td> <td>YYYY-MM-DD</td> <td>YYYY-MM-DD</td> <td>2025-02-15</td> <td>2025-02-30</td> <td>A학부과목</td> <td>Y</td> <td>15,000,000 원</td> <td>10,000,000 원</td> <td>5,000,000 원</td> <td>0 원</td> </tr> <tr> <td>2025-147-93</td> <td>OO 과목</td> <td>통합Ezbero</td> <td>YYYY-MM-DD</td> <td>YYYY-MM-DD</td> <td>2025-02-01</td> <td>2025-03-30</td> <td>A학부과목</td> <td>Y</td> <td>15,000,000 원</td> <td>15,000,000 원</td> <td></td> <td>0 원</td> </tr> </tbody> </table>	기관 관리 내역번호	과목명	과목유형	입회 연월일	입회 연월일	연구개발비 입회일시	이체이월 연월일	계정명	이체 유형	이체 금액	이체이월 연월일	이체이월 연월일	이체이월 연월일	2025-123-90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5-01	2025-03-30	기관관리계정	Y	30,000,000 원	30,000,000 원		0 원	2025-456-91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1-01	2025-05-01	기관내부계정	N	20,000,000 원	20,000,000 원		0 원	2025-789-92	OO 과목	통합RCHS	YYYY-MM-DD	YYYY-MM-DD	2025-02-15	2025-02-30	A학부과목	Y	15,000,000 원	10,000,000 원	5,000,000 원	0 원	2025-147-93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2-01	2025-03-30	A학부과목	Y	15,000,000 원	15,000,000 원		0 원	<p>그림 내 '학생인건비 예산액 항목' 추가</p>
기관 관리 내역번호	과목명	과목유형	입회 연월일	입회 연월일	연구개발비 입회일시	이체이월 연월일	계정명	이체 유형	이체 금액	이체이월 연월일	이체이월 연월일	이체이월 연월일																																																																																																																										
2025-123-90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5-01	2025-03-30	기관관리계정	Y	30,000,000 원	30,000,000 원		0 원																																																																																																																										
2025-456-91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1-01	2025-05-01	기관내부계정	N	20,000,000 원	20,000,000 원		0 원																																																																																																																										
2025-789-92	OO 과목	통합RCHS	YYYY-MM-DD	YYYY-MM-DD	2025-02-15	2025-02-30	A학부과목	Y	15,000,000 원	10,000,000 원	5,000,000 원	0 원																																																																																																																										
2025-147-93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2-01	2025-03-30	A학부과목	Y	15,000,000 원	15,000,000 원		0 원																																																																																																																										
기관 관리 내역번호	과목명	과목유형	입회 연월일	입회 연월일	연구개발비 입회일시	이체이월 연월일	계정명	이체 유형	이체 금액	이체이월 연월일	이체이월 연월일	이체이월 연월일																																																																																																																										
2025-123-90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5-01	2025-03-30	기관관리계정	Y	30,000,000 원	30,000,000 원		0 원																																																																																																																										
2025-456-91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1-01	2025-05-01	기관내부계정	N	20,000,000 원	20,000,000 원		0 원																																																																																																																										
2025-789-92	OO 과목	통합RCHS	YYYY-MM-DD	YYYY-MM-DD	2025-02-15	2025-02-30	A학부과목	Y	15,000,000 원	10,000,000 원	5,000,000 원	0 원																																																																																																																										
2025-147-93	OO 과목	통합Ezbero	YYYY-MM-DD	YYYY-MM-DD	2025-02-01	2025-03-30	A학부과목	Y	15,000,000 원	15,000,000 원		0 원																																																																																																																										
<p>p.64</p>	<p>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수입처리 시 학생인건비 예산액을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체하도록 전산시스템 제어 기능 구현 	<p>p.66</p>	<p>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수입처리 시 학생인건비 예산액을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 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체하도록 전산시스템 제어 기능 구현 	<p>설명 보강</p>																																																																																																																																		

<input type="checkbox"/>	3.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기한(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내 학생인건비 수입액의 이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 여부	<input type="checkbox"/>	3.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기한(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내 학생인건비 수입액의 이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 여부	
p.71		p.73		설명 보강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학년 단위로 지급 계획을 등록하고, 전월 등 이전 기간에 대한 지급 계획이 등록되지 않도록 제어 • 학생연구자가 학기/학년 중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시작일은 실제 참여 개시일로 입력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학년 단위로 지급 계획을 등록하고, 전월 등 이전 기간에 대한 지급 계획이 등록되지 않도록 제어 • 학생연구자가 학기/학년 중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시작일은 실제 참여 개시일로 입력 (소급 등록 불가능하므로 학약 일이 참여시작일보다 늦을 수 없음) 	